

의안번호	2217537
의 퇴 인	조지연 의원
회 답 일	2026.06.11.
추 계 번호	26C167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195억 900만원, 2031년 3,643억 2,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7,890억 4,600만원 (연평균 3,578억 9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학급 설치 기준 강화 (안 제27조)	419,509	321,230	334,751	349,231	364,324	1,789,046	357,809
학급 설치·운영	248,404	143,324	146,191	149,115	152,097	839,131	167,826
교원 인건비	171,105	177,906	188,560	200,116	212,227	949,915	189,9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1항)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u>4인</u>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u>4인</u>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u>5인</u>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u>5인</u>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①학급 설치·운영비와 ②교원 인건비의 합으로 하며,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산출
 - (학급 설치·운영비) 개정안에 따른 신규 학급 수에 학급당 설치·운영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설치·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가정
 - 모든 신규 학급이 2027년에 설치되며, 이후에는 추가적인 학급 설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교원 인건비) 신규 학급당 특수교육교원 1명이 배치된다고 가정하며, 설립 주체를 구분하여 추계
 - 2027년에 특수교육교원이 일괄 충원되어 배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
 -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신규 학급 수와 동일하며, 2027년 이후 추가적인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학급·설치 운영비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신규 학급 수에 학급당 설치·운영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8,391억 3,100만원(연평균 1,678억 2,600만원)으로 추계
 - (신규 학급 수) 개정안의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목표 학급 수에서 운영 중인 학급 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3,771개로 추정
 - 「2025 특수교육통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학급 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해당 수치를 준용함

[표 2] 신규 학급 수 추계

(단위: 개)

구분		목표 학급 수(A)	운영 학급 수(B)	신규 학급 수(C=A-B)
초 등 학 교	국·공립	10,991	9,078	1,913
	사립	967	744	223
	소계	11,958	9,822	2,136
중 학 교	국·공립	4,902	3,904	999
	사립	747	577	170
	소계	5,650	4,481	1,169
고 등 학 교	국·공립	3,142	2,749	393
	사립	696	623	73
	소계	3,838	3,372	466
합 계	국·공립	19,036	15,731	3,305
	사립	2,410	1,944	466
	소계	21,446	17,675	3,771

자료: 「2025 특수교육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설치·운영비 단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른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를 준용하되,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학급이 신설되는 2027년은 신설 학급 설치·운영비를 준용하고, 이후 추계기간 동안 기존 학급 설치·운영비를 준용함

[표 3] 설치·운영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초등학교	65,024	37,463	38,212	38,976	39,756
중학교	66,077	37,056	37,797	38,553	39,324
고등학교	69,245	42,886	43,743	44,618	45,511

주: 2027년은 신설 학급 설치·운영비를 준용하고, 이후 추계기간 동안 기존 학급 설치·운영비를 준용함
 자료: 「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248,404	143,324	146,191	149,115	152,097	839,131	167,826
초등학교	138,892	80,021	81,621	83,254	84,919	468,707	93,741
중학교	77,244	43,319	44,185	45,069	45,970	255,787	51,157
고등학교	32,268	19,985	20,384	20,792	21,208	114,638	22,9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교원 인건비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설립 주체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9,499억 1,500만원(연평균 1,899억 8,300만원)으로 추계

- (국·공립)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하여 봉급, 수당 및 기관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추계
 - － (봉급) 교육공무원의 월 봉급을 준용하되 특수학교 교사의 가산호봉을 고려하여 10호봉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매년 1호봉씩 상승한다고 가정
 - － (수당) 정근수당 및 가산금, 직급보조비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산출
 - － (기관부담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합으로 하며,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추계
- (사립) 상술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을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준용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추계
 - － 국·공립학교 교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값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하고, 이에 국가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출

- － 국가부담금 비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 및 동법 시행령²⁾에 따라 3.706%로 함

[표 5] 인건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국·공립	51,534	53,582	56,791	60,272	63,920
봉급	31,526	33,080	35,016	37,644	40,395
수당	14,027	14,256	15,115	15,516	15,935
기관부담금	5,981	6,245	6,660	7,112	7,590
사립	1,688	1,754	1,858	1,970	2,0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6]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초등학교	98,960	102,893	109,056	115,739	122,744	549,392	109,878
국·공립	98,584	102,502	108,641	115,300	122,278	547,305	109,461
사립	376	391	414	439	466	2,087	417
중학교	51,769	53,827	57,050	60,546	64,211	287,403	57,481
국·공립	51,482	53,528	56,734	60,212	63,856	285,812	57,162
사립	287	298	316	335	355	1,591	318
고등학교	20,376	21,186	22,455	23,831	25,273	113,120	22,624
국·공립	20,253	21,058	22,319	23,687	25,120	112,437	22,487
사립	123	128	136	144	152	683	137
합계	171,105	177,906	188,560	200,116	212,227	949,915	189,983
국·공립	170,318	177,088	187,694	199,198	211,255	945,554	189,111
사립	787	818	866	918	973	4,361	8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개인부담금)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